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1.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

물질명: 아연 스테아린산(Zinc Stearate)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등.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음용불가. 시험용, 연구용 및 산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공급자 정보

공급자 : OCI주식회사

공급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종구 소공로 94(소공동) TEL : 02 - 727 - 9494

담당부서 : PEROXIDE/SC사업팀

### 2. 유해성 · 위험성

1) 유해성 · 위험성 분류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계 자극)

2)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 · 위험문구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P261 (분진 · 흥 · 가스 · 미스트 · 증기 ·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대응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3) 유해성 ·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 · 위험성(NFPA)

보건

1

화재

2

반응성

0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아연 스테아린산
이명(관용명)	OCTADECANOIC ACID, ZINC SALT
CAS 번호	557-05-1
함유량(%)	100%

#### 4. 응급조치 요령

- |                |   |
|----------------|---|
| 1)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br>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 2) 피부에 접촉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br>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br>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
| 3) 흡입했을 때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br>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br>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
| 4) 먹었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 5)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

####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1)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 2)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 3)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흘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훑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3)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를 것을 허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허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허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

## 7. 취급 및 저장 방법

---

1) 안전취급요령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2)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0 mg/m<sup>3</sup>

ACGIH 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2)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3)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비산물,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손 보호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

## 9.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성상	고체(외관변화 : 습기에 민감)
색상	흰색
냄새	독특한 냄새
냄새역치	자료없음
pH	6.5 ~ 7.5 (33 % 슬러리)
녹는점/어는점	130 °C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분해)
인화점	277 °C
증발속도	(해당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0.002 / - %
증기압	(2.71E-15 mmHg, 25°C (추정치))
용해도	(4.81E-15 g/100mL, 25°C)
증기밀도	(해당 안됨)
비중	1.1
n-옥탄올/물분배계수	1.2
자연발화온도	420 °C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	자료없음
분자량	632.3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                         |  |
|-------------------------|--|
| 1)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br>점화하지 않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br>있음 |
| 2) 피해야 할 조건             | 열  |
| 3) 피해야 할 물질             | 자료없음   |
| 4)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자극성, 독성 가스   |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                          |                          |
|--------------------------|--------------------------|
| 1) 가능성 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자료없음                     |
| 2) 건강 유해성 정보             |                          |
| 급성독성                     |                          |
| 경구                       | LD50 > 5000 mg/kg Rat    |
| 경피                       | 자료없음                     |
| 흡입                       | LC50 > 50 mg/ l Rat      |
|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 사람에게 피부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사람의 눈에 자극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 호흡기과민성                   | 자료없음                     |
| 피부과민성                    | 사람의 피부에 과민성이 보고되지 않음.    |
| 발암성                      |                          |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Stearates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 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사람의 기도에 자극성의 가능성성이 있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 2)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1.2 log Kow
분해성	BOD5/COD 0.138

### 3)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 4) 토양이동성

### 5) 기타 유해 영향

## 1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시오.
- 폐기시 주의사항 자료없음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 용기 등급 해당없음
-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 15. 법적 규제 현황

- |                       |                      |
|-----------------------|----------------------|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유해물질<br>노출기준설정물질 |
|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
|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 국내규제                  |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 국외규제                  |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없음                 |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없음                 |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

## 16. 기타 참고자료



제공된 정보는 제품에 대한 현상태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명세에 따르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배합 및 혼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용자는 제품, 개인 위생, 인류 복지와 환경 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 행정, 규제 절차를 준수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